

대한럭비협회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공개 채용

대한럭비협회는 대한민국 럭비 종목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 채용합니다. 열정 가득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대한럭비협회(KOREA RUGBY UNION)는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기관으로 럭비 종목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 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럭비 종목을 소관 하는 월드럭비(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럭비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주요업무
기간제 계약직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 꿈나무선수 훈련 진행 및 관리 ○ 미래국가대표 훈련(합숙,국외)지도, 선수 인권보호와 안전, 건강 및 체력관리 지원 등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근무신분	근무시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월급(세전)*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기간제 계약직	탄력적 운영	꿈나무선수 강화훈련지(국내/외)	합숙훈련(28일) 및 국외훈련(미정)	일일 120,000원 * 국외파견 시, 일비(\$30) 지급

* 대한체육회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수당에 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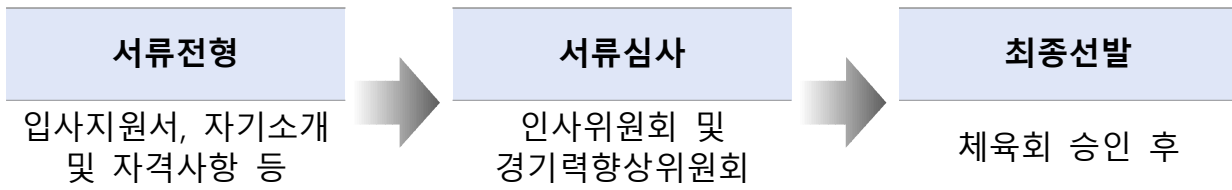
** 4대보험 미지급

*** 합숙훈련 일정(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필수 자격요건	1)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된 사람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종목 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함) 2) 미래국가대표 전문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①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②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 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이 있는 사람 ③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 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④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과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 그리고 해당종 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우대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3점) ○ 외국어 능통자(공인영어점수 기준/ 증빙서류 제출 필수) (2점)			
		TOEIC	TOEFL	TEPS	G-TELP
		700점 이상	iBT 95점 이상	330점 이상	Level2 60점 이상

4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7.14.(월) ~ 2025.8.5.(화), 15:00 * 서류제출 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필수 제출 ** 메일 및 지원서 제목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지원(성명) 필수]
합격자발표	2025.8.8.(금) 예정
정식임용	꿈나무선수 합숙훈련 시작일 ~ 합숙훈련 종료일 ※ 훈련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나. 전형별 주요내용(채용방법: 채용공고를 통한 공개경쟁 채용)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① 공통(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하며, <u>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u>하여야 한다. - 자격 및 경력사항은 <u>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확인</u>하며, 두 서류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u>두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사항 및 증빙서류를 우선으로 인정</u>함. <u>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u>								
② 전형별 평가방법								
서류전형	(선발인원) 3명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자기소개 등 평가	-						
	<table><tr><th>구 분</th><th>주요내용</th></tr><tr><td>자격요건 확인</td><td>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td></tr><tr><td>가점요소 평가</td><td>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td></tr></table>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 필수 자격 충족 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 문항별 공백 포함 1,000자의 50%미만 작성 시, 탈락 * 동일 음절, 문장 등 5회 이상 반복된 경우, 탈락 * 평가위원 과반 수 이상의 블라인드 작성 원칙 위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탈락							
가점요소 평가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서류제출 시 제출)							
최종합격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각 평가항목 고득점자순(활동경력 → 전문성 → 성장성 → 종합평가)으로 결정함.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차순위 1~2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합숙훈련 시작일 전까지	
예비합격 운영		2배수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최대 5점 반영)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사항	적용기준	관련근거			
		서류	면접						
정부 권장 정책	청년 (만15~34세)	✓		3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서류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어학	외국어 능통자	✓		2점	• 외국어 능통자(공인영어점수 기준)				
						TOEIC	TOEFL	TEPS	G-TELP
						700점 이상	iBT 95점 이상	330점 이상	Level2 60점 이상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① 공통(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원서접수	- 입사지원서(대한럭비협회 양식)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꿈나무선수 전문지도자 지원(성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담당자 이메일로 8.5.(화) 15:00 까지 제출 - nationalteams@rugby.or.kr	입사지원 및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 * 남성지원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 - 관련 자격증 - 관련 경력 증명서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마련의 무에 대한 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	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2025.8.5.)을 기준으로 기재

6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럭비협회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럭비협회 홈페이지(<http://rugby.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각 미래국가대표 사업별 전담, 전문, 트레이너 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지원자는 반드시 한 개 채용 분야에만 응시해야 합니다.

7 임용 결격사유

□ 대한력비협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임용 결격사유)

제17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협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5. 7. 14.(월)

[사]대한력비협회